

구미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2. 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 제안이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여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하고 업무량이 증가되는 부서에는 업무추진 환경에 맞게 행정기구를 적의 재조정하여 효율성 있는 업무추진체제 확립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국 명칭 변경
 - 경제진흥국 ⇒ 경제통상국
- 기구조정
 - 통폐합 : 정보부서 2개 담당관 ⇒ 1개 담당관
 - 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화지원담당관 ⇒ 정보통신담당관
 - 분리 : 경제통상과 ⇒ 2개과
 - 경제진흥과, 투자통상과
- 직렬조정
 - 정보화기획담당관(행정+전산5급) ⇒ 투자통상과장(행정5급)
- 업무조정
 - 【당초】
 - 지역, 산업, 도시정보화사업 추진 ⇒ 기획정보실
 - 【조정】
 - 행정,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 기획정보실
 - 산업정보에 관한 사항 ⇒ 경제통상국
 - 도시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 도시건설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경제진흥국”을 “경제통상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획정보실에 두는 담당관)①기획정보실에 기획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둔다.

②기획정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 조정
2.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
3.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행위
4.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공포 및 소송업무
5. 시의회 운영 지원
6. 행정,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7. 전산, 통계, 통신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추진
8. 시정시책의 홍보
9. 시보, 시정신문 및 각종 홍보간행물 발간
10. 문화·예술의 육성
11. 문화재 보존관리
12. 관광사업 지도 육성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경제통상국에 두는 과)①경제통상국에 경제진흥과, 투자통상과, 노동복지과 및 교통행정과를 둔다.

②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
2.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3.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개정2000. 10. 10)
4. 수출입 지도 및 공산품 품질관리
5. 물가동향 파악
6. 연료수급 및 안전관리 대책
7. 도소매업, 광공업 관리
8. 노동행정에 관한 업무
9. 실업대책의 수립 시행
10. 교통행정의 기획, 조정

11. 운수사업체 지도
12. 산업정보에 관한 사항

제9조 제2항중 제12호 다음에 제13호를 신설한다.

13. 도시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조 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실·국의 설치)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정보실, 행정지원국, 생활복지국, <u>경제진흥국</u> , 도시건설국을 둔다.	제3조(---·-----)----- -----, -----, -----, <u>경제통상국</u> , -----.
제4조 (생략)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기획정보실에 두는 담당관) ①기획정보실에 기획담당관, <u>정보화기획담당관</u> , <u>정보화지원담당관</u> , 문화공보담당관을 둔다. ②기획정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기획정보실에 두는 담당관) ①--- -----, (<u>삭제</u>), <u>정보통신담당관</u> , -----. ②-----.
1. 시정의 기획·조정 2.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 3.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공포 및 소송업무 5. 시의회 운영 지원 6. <u>지역, 산업, 도시정보화 사업 추진</u> 7. 전산, 통계, 통신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추진 8. 시정시책의 홍보 9. 시보, 시정신문 및 각종 홍보간행물 발간 10. 문화예술의 육성 11. 문화재 보존관리 12. 관광사업 지도 육성	1. ----- . --- 2. ----- 3. ----, ---, -----, ----- 4. -----, ---. ----- ----- 5. ----- 6. <u>행정, 지역정보화사업 추진</u> 7. ---, ---, ----- 8. ----- 9. ---, ----- 10. ----- 11. ----- 12. -----
제6조 ~ 제7조 (생략)	제6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u>경제진흥국</u> 에 두는 과) ① <u>경제진흥국</u> 에 <u>경제통상과</u> , 노동복지과 및 교통행정과를 둔다. ② <u>경제진흥국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u>경제통상국</u> 에 두는 과) ① <u>경제통상국</u> --- <u>경제진흥과</u> , <u>투자통상과</u> -----. ② <u>경제통상국장</u> -----.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 2.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3.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개정 2000.10.10) 4. 수출입 지도 및 공산품 품질관리 5. 물가동향 파악 6. 연료수급 및 안전관리 대책	1. ----- 2. ----- 3. ----- 4. ----- 5. ----- 6. -----

현행	개정안
7. 도소매업, 광공업 관리 8. 노동행정에 관한 업무 9. 실업대책의 수립 시행 10. 교통행정의 기획, 조정 11. 운수사업체 지도 (신설)	7. ----- , ----- 8. ----- 9. ----- 10. ----- . --- 11. ----- 12. <u>산업정보에 관한 사항</u>
제9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①도시건설국에 도시과,건설과,상하수도과 및 건축과,지적과를 둔다. ②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업무 2. 토지구획정리사업 3. 전문건설업 면허 및 온천관리 4. 자연.도시공원 계획수립 및 조성관리 5. 국.공유재산 관리 6. 도로개발계획 수립 시행 7. 홍수예방 및 자연재해 대책 8. 지역재난관리 종합대책 9. 상하수도 업무 10. 택지개발 및 도시재개발 업무 11. 주택건설 계획 수립 및 건축사 지도 12. 지적업무 (신설)	제9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①----- -----,----- ,----- , ----- . ②-----. 1. ----- 2. ----- 3. ----- 4. ---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u>도시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u>